

19세기 東萊府의 官舍營繕에 관한 研究

金 淑 瓊

(釜山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博士課程)

金 純 一

(釜山大學校 建築學部 教授)

주제어 : 東萊府, 官舍營繕, 公文, 建築行政, 工事體制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세기 동래부의 官舍營繕¹⁾은 자체적으로 완결된 需給構造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신임지방관에 대한 新迎禮節로서 東軒과 內衙를 보수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 외 官廡 및 公廡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영선공사가 있었으나 독립된 공사기구가 없이 府治內 모든 행정조직이 동원되어 시행되었다. 관사영선은 관영 공사이므로 공사의 개기일은 물론이고 공사의 물자조달과 진행과정을 상부기관인 慶尙監營(이하 巡營)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았으며 목재의 취용에 있어서는 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慶尙左水營(이하 水營)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동래부의 하부행정은 이 당시 9개 面과 131개 里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은 烟丁으로서, 또한 공사비염출 또는 물자조달처로서 협력해야 했으며 그럴 경우 다른 잡역을 감해주는 조치가 뒤따랐다. 19세기는 동래부에서 雇立制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으나 民役에 대한 각종 雜役의 일환으로

영선공사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영선은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지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공사이며 동래부가 처해 있던 당대 모든 역사적 여건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관사는 지방마다 존재하였던 비중과 규모에 비해 현재 유구가 매우 적은 편이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실정이며 지방의 관사조영, 특히 그 과정 및 공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관사의 칸수나 위치 및 간단한 중수연혁을 밝히고 있는 읍지류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 관영공사는 상·하부기관간의 公文을 통한 建築行政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기록된 사료를 남기고 있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특히 몇 건의 대규모 관아영선공사의 공문을 전하고 있는 동래부를 중심으로 동래사료 및 타지방의 사료들을 조사, 연구하여 그 공사과정과 체계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지방의 건축공사에 대한 이 분야의 연구에 작은 출발점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동래부가 특수한 사례로 다뤄지기보다는 장차 이와 같은 지방의 연구사례가 확충되어서 전반적인 조선시대 조영방식으로 확대되는 데에 一助할 것으로 기대한다.

1) 본 논문에서 官舍는 관부의 시설물을 총칭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官廡(창고), 公廡, 衙舍(동헌과 내아), 廳舍(武廳의 건물) 등 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건물을 포함하고자 한다.

營繕은 이와 같은 관사에 대해 간단한 수리에서 대규모 중수공사까지 포함하며 관영으로 전개된 공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동래부의 관사영선, 그 방식과 체제에 대해 주로 공사와 관련한 공문과 일반 사료들을 수집하여 집중 연구하여 먼저 지방의 일반적인 관사영선의 범위와 그 규모를 밝히고자 한다²⁾. 또한 관영공사는 지방 행정체제속에서 전개되었으므로 건축행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사에 관한 동래부의 관부문서를 통해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의 모든 절차를 비롯하여 목재조달과 작업에 있어서 관부의 감독사항 및 작업지시방법, 공사경비충당문제 등 구체적인 동래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공사를 주도하고 집행한 공사조직의 특징과 인력구성원이 향촌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부역하였던 대다수 民役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助力없이 자체적인 구조로 전개된 19세기 동래부의 건축역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관사에 대한 관례적인 점검과 영선 및 재정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재정상태를 알려주는 동래부 「公文日錄」과 各郡事例³⁾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사례는 먼저 「東萊府事例」(1868)와 「多大鎭事例」(1894)를 바탕으로 하고 工房의 관사영선에 대한 업무기록이 상세한 편인 전라남도 「光陽縣各所事例冊」(1850)을 비롯해서 영선에 대한 기사를 신고 있어서 참고가 되는 「竹樹事例」(綾州牧 1894), (호남) 「營事例」(全州府 1894)등과 평안도 「江界府事例」(1856) 등이다.

동래부에서는 관사영선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상하부기관간의 공문을 통하여 작업을 보고하거나 지시하였으며 대규모 영선공사는 공사를 마친 후 순연에 보고하기 위해 별도의 謄錄으로 성책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공사관련등록은 1869년에 시작된 부사 정현덕의 동헌개건공사를 정리해 둔 것으로 「城役及各公廡重修記」⁴⁾와 1825년의 초량객사 외대문 개건공사 및 1873년의 초량객사 중수공사의 공문을 묶어 놓은 「草梁客舍重修謄錄」이다. 공문발송일자 순서대로 수신처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⁵⁾

2. 관사영선의 범위와 규모

2.1 慣例적인 新迎時 衙舍營繕

조선시대의 모든 지방관에게는 법전에 규정된 일정한 임기가 있다. 그러나 법정임기가 차기도 전에 빈번히 교체되기도 하였으므로 수령이 바뀔 때마다 행해지는 新迎禮節을 자주 치루어야 했다. 新迎禮節이란 신임수령이 到任하기 전에 그를 위해 치르는 의례적인 행사로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支裝封進, 官舍修理, 旗幟迎接, 風約待候, 中路問安이 그것이다. 支裝封進은 鞍具, 衣資, 紙物과 膳物 등 그 지방의 산물을 예물로서 신임수령에게 올리는 것이며, 관사수리는 신임수령을 맞이하기 위해 관아의 廳舍를 새로 단장하는 것이다. 旗幟迎接은 수령이 도임할 때 東伍軍을 읍내에 동원하여 旗幟를 들고 영접하던 것이며 風約待候는 外村의 風憲, 約正, 將官들이 수령을 맞이하기 위해 읍내에 들어와서 기다리게 하였던 것이며 中路問安은 향리들이 到任途上에 있는 수령에게 계속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신영예절은 지방관의 잦은 교체로 연례행사처럼 되었고 많은 경비와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서 많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⁶⁾

동래부에서도 지방행정을 실제로 도맡고 있는 향리들은 새로운 지방관의 부임때마다 동헌과 내아 일곽에 대한 영선공사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

2) 동래부의 관사들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현존하고 있는 유구가 많지 않고 조선후기에 비하여 상당히 변경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치추정이나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동래부의 관사는 東萊府 東軒(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21-56, 7), 多大浦 客舍(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산144), 望美樓(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209), 獨鎭大衙門(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20-12), 軍官廳(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 경내), 將官廳(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501-1) 등이다. 『부산의 문화재』(부산직할시, 1993) 참조

3) 19세기 후반의 官撰邑誌에는 대부분의 지방의 경우 간단한 형태로 사례가 부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지방이 관장하는 邑事 전반에 걸친 규정과 구체적인 운영내역의 범례가 기술되어 있다. 다만 각군사례는 일회적으로 발간된 것이기에 누년에 걸친 재정운영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자료이다. 따라서 각종 관부문서와 함께 검토되어야만 한다. 『韓國地方史資料叢書』 7, 驪江出版社, 1987, 解題 참조

4) 이하 <重修記>로 줄여 출처를 밝힌다.

5) 이 등록에는 「草梁客舍外大門改建謄錄」(이하 <改建謄錄>)과 「草梁客舍重修謄錄」(이하 <重修謄錄>)이 합쳐되어 있다.

6) 『牧民心書』 卷1, 赴任 참조

李源鈞, 「朝鮮時代 地方官의 交遞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論文, 1987, pp95~96 참조

다. 동래부가 명종 2년(1547) 都護府로 승격된 후, 동래부사는 당상관인 동시에 未挈家 수령이었기 때문에 임기는 약 2년 6개월이었으며 가족을 데리고 부임할 수 없었다. 또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된 자는 전체의 8.9%에 지나지 않고 조선시대 대부분의 동래부사는 법정임기에 1개월 내지 6개월씩 미달되었거나 아예 법정임기가 무시된 무원칙적인 경우도 많았다.⁷⁾ 동래부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었으나 잦은 수령의 교체는 신영시의 관사영선이라는 관례가 뒤따르게 하였다.

신영시 관사수리의 규모는 항상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주로 東軒과 內衙의 도배나 鋪陳(자리를 까는 것)에 그치는 경우⁸⁾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내아와 담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그 영선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 고종28년(1891) 7월에 부임한 부사 李鎬性은 부임직후 문묘에 廟宇를 3칸 새로 짓고 내아에는 慈婦의 침소가 없어 4칸짜리 건물을 세우고 내아의 남쪽에 담장을 신축하여 일체화시키도록 하였다.⁹⁾

영선공사의 회계와 물자수급담당은 공방색리의 업무였지만 새로 부임한 지방관에 대한 신영예절로서 六房과 이하 모든 향촌의 행정조직이 동원된 중요한 행사였다. 이러한 관례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었다. 1868년 동래부는 工錢 중 800냥의 한도에서 영선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고, 1894년 全羅左道 綾州牧의 경우 신임 지방관 교체시 관사 수리로 100냥을 지출하였다. 平安道 江界府의 경우 1856년의 신영시에 衙舍 修理所를 설치하여 200냥의 비용지출을 한 바 있다. 또 多大鎭의 경우에도 1894년 56냥 5전 4푼을 공방색리에게 지급하였는데 금액은 해마다 같지 않았다. 이를 각 지방사례로부터 발췌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東萊府事例 吏房 中

新延雜費及衙舍修理 次其樣公錢中限八百兩貸下事
竹樹事例, 工房 中

遞等時衙舍修理錢一百兩

江界府事例, 不恒上下 中

...二百兩 修理所 新延時下

多大鎭事例, 不恒下秩 中

...五十六兩五錢四分新延修理所入工房色上下年各不同

2.2 官舍의 점검과 修補

지방의 관사는 정기적으로 칸수를 헤아려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¹⁰⁾ 修補할 필요가 있는지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동래부에서는 연말마다 衙舍와 창고의 칸수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순영에 보고하였다. 다대진의 경우 城堞과 城內 公廡의 경우 매년 한차례의 점검을 하여 수리하였고 守城錢의 일부가 예비되어 있어서 사용하였다. 또 사신접대를 위한 객사는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할 때 監色을 정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전라감영의 경우 창고와 같은 官廡는 담당자가 봄, 가을로 두 번 점검하여 鄉所에 보고하고 修補하였다. 다음은 지방사례에 기록된 공방의 사무증에서 이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東萊府事例」 工房 中

衙舍各庫間數開錄每歲末報于巡營事

「多大鎭事例」 工房所 中

城堞修理每年一次客舍修理隨時次知監役舉行

「(湖南)營事例」 軍器色 中

本廳修理每年春秋鄉所摘奸隨毀修補事

이와 같이 지방의 관사는 공방색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修補하여 관리하여 왔고 그 현황을 읍지류나 한 해의 재정현황을 보고하는 物木類의 별책 본이나 또는 사례 등에 정리해 두고 있어 현재에 참고가 되고 있다.¹¹⁾

10) 「公廡各處滲漏類摘奸成冊」(奎27721) 관청중에 비가 새거나 낡아 보수해야 할 곳을 조사한 장부로 수리처와 수리비용을 정리해놓고 있는 기록이다. 지방감영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나 연도와 기록처가 누락되었지만 이러한 판사점검이 일반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고 생각된다.

11) 성책된 사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江原監營各公廡修補物力區別成冊」(1875)

7) 「東萊府先生案」을 통해 부사의 임기와 교체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 李源鈞, 앞의 논문, pp76~86 참조

8) 「多大鎭事例」, 工房所

新延時 東軒內衙 塗繕鋪陳 及記付紙簿筆墨受價 兵所依例進排

9) 「公文日錄」 第3卷 참조

...而素無祠宇 定處或借公廡 而設卓則不無 湫隘之難 故新建之方 鄉武作爛議後 所入物材自防役庫精畧措 辦開基於內衙北墩臺之上 創建廟宇三間之時 使主慈婦氏寢所亦無 其處四間之屋 同爲一體 新建於內衙南牆之下是齊

(동래부사는 未挈家 수령이었지만 부인의 침소를 새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말에는 그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관사가 지어진지 오래되고 부재 부식이 심하고 낡아서 지붕으로 물이 새는 등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가 큰 중수공사를 시행하였고 특별히 퇴락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방관의 임기중에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改建하기도 하였다. 영선공사의 조영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례 가운데 光陽縣의 경우, 羅將廳은 창건한 지 매우 오래되어 서까래와 용마루가 꺾이고 상하여 비가 새어 들어와 급히 1800년 3월에 건물을 헐고 중건한 바 있었다.¹²⁾

동래부에서는 동헌과 초량객사에 대한 대규모 영선공사가 있었다. 1800년 부사 金觀柱가 부임 1년 후 동헌을 破屋하고 새로 건축한 이후 다시 고종 4년(1867) 6월에 동래부사로 도입한 부사 鄭顯德은 2년후에 건물을 부수고 개건하였다. 초량공해의 하나인 객사도 오랜 시간 풍우에 씻겨 낡아서 중수하였고 비바람으로 부서진 초량객사외삼문도 2년에 걸쳐 改建한 바 있다. 다음 절에서 동래부의 사례로서 이들 영선과정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2.3 부사 鄭顯德의 東軒改建

동래부 동헌은 10칸의 아헌으로 부사 鄭良弼이 1636년에 세웠다. 수령의 집무처로서 좌우에 동익랑과 서익랑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문, 외대문, 望美樓 등 그 일곽이 49칸에 달하는 규모였다.¹³⁾ 창건후 약 300여년이 지나는 동안 몇 차례의 중수공사가 있었다가 건물이 너무 낡아서 헐고 부사 鄭顯德이 새로 개건하게 되었다.

그는 1869년 11월 23일 동헌개건공사를 결정하고 공사의 감독조직원과 기술조직원을 구성하였다. 또 공사준비기간을 이듬해 2월에서 3월 사이로 잡고 그 동안 목재와 기와를 마련하며 필요한 인력을 모으기로 하였다. 다음해 봄인 4월 30일 破屋祭를 지낸 후 공사를 시작하여 한 달후인 5월 30일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¹⁴⁾

「原州郡前監營廡舍間數成秩」(1897)

「慶尙南道東萊府多大鎮牧公廡間數秩」(1877)

「平安道成川府事例」(1895)

「江界府事例」(1856)

「東萊府事例大概」(1871) 등

12) 「羅將廳重建上梁文」 1800

13) 「東萊府誌」(1740), 官舍條 참조

14) 東軒改建捧飭, 己巳 11월 23일, <重修記>

12월 13일 목재를 絶影影에 있는 봉산에서 구하기로 하여 水營에 공문을 보내었다. 이 공문에서 공사의 경위를 설명하고 봉산의 소나무밭에서 서까래로 필요한 소나무 100주와 수장용의 재목까지 합하여 200주를 신청하였다.¹⁵⁾ 이 재목을 공사현장까지 운반해올 때는 감관행수인 군관의 지휘로 군인들을 동원하겠지만 각 면의 유향소에 백성들의 運來 협조를 당부하였다.¹⁶⁾

그런데 機張에 부족한 목수 4명과 함께 大松 5주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고 재목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¹⁷⁾ 그러다가 그 문제를 뜻밖에 倭館에서 해결해 주는데 館守倭는 큰 소나무 5주를 花池山에 있는 동래 정씨 문중의 松田에서 사서 보내주었다. 동래부사는 이에 대해 감사의 예물로 綿紬 1필, 黃苧布 1필, 文木 2필, 黃栗 1되, 胡桃 1되와 〇子 1되를 보내어 답례하였다.¹⁸⁾

왜관의 물질적 협조는 17세기부터 전개된 동래부와 왜관의 관계가 19세기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17세기 이후부터 왜관에서 개시된 대일무역을 동래부가 통괄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세의 형태로 지방재정의 일부를 마련하였다. 또 왜관건물에 대한 수리도 동래부에서 감독하고 공사비나 자재공급을 담당하고 있었다.¹⁹⁾ 대조선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對馬島主는 대일무역에서 지방관아의 권한이 강화되자 倭學譯官 뿐만 아니라 京司의 아전과 심지어 관노비에게까지 관례적으로 뇌물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관행은 대체로 묵인되었던 것이다.²⁰⁾

기와와 벽돌은 沙上面에서 만들도록 하였는데²¹⁾ 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하게 하였고²²⁾ 와벽을 구

15) 水營了清材事報狀, 己巳 12월 13일, <重修記>

16) 各面了運材事留鄉所報, <重修記>

17) 機張了木手事移文, <重修記>

18) 同館守倭處致謝帖文及禮物, <重修記>

19) 「東萊府事例」 工房條에 왜관수리에 드는 공사비지급과 자재지급에 관한 기사들이 엮여 있다.

20) 양홍숙, 「17~18세기 倭學譯官의 대일무역」,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8, pp7~11 참조

이미 왜관을 통한 무역이 쇠퇴하였던 조선시대 말엽까지 이와 같은 원조가 있었다면 대일무역이 성행하였던 17~18세기 동래부의 관영공사에 왜인의 협조가 상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 이 부분을 논할 여지가 부족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1) 沙上面首處傳令, <重修記>

22) 燔瓦監官處傳令, <重修記>

위널 땀감나무는 부산진의 봉산에서 공급해주도록 명령하였으며²³⁾ 이를 위하여 부산진을 관할하는 統營에까지 땀감나무의 작별 공급허가를 요청하였다.²⁴⁾

목수는 이미 동래부의 민간도목수인 金再麗를 중심으로 세 명의 부목수를 처음에 조직하였던 대로 시행되었고 부족한 목수는 기장에서 4명을 보내주어 확충하였다.

마침내 1870년 2월 11일에 開基祭를 행하고 공사를 착수하였다. 이 때의 獻官은 본 공사의 도감으로 전직 좌수인 文奎滢이었다. 다음은 동헌공사와정을 택일한 일자로 정리한 것이다.

東軒 再建擇日記 癸坐丁向
 1870년 1월 30일 破屋
 2월 11일 開基
 2월 29일 定礎
 3월 13일 立柱
 3월 18일 上梁
 4월 6일 蓋瓦
 6월 6일 入宅



그림 1 최근의 동래부 동헌 전경
(1978년 보수공사후의 모습)

현재 동래부 동헌은 위의 <그림1>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로 무고주 7량가로 된 단층집이다. 팔작지붕에 겹처마이며 연등천장이고 두공은 초익공이다. 일제시대에는 東萊郡廳 청사로, 1973년 동래군이 양산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양산군 보건소 동부지소로 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벽면, 천정, 마루 등이 많이 개조²⁵⁾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이 때의 공사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2.4 草梁客舍 營繕

초량객사는 왜관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관아인 草梁公廨 중 왜사신이 津上肅拜하던 장소로서 부에서 27리에 위치하여 設門내에 있었다. 1676년 부사 李馥이 중건하고 1734년 부사 崔命相이 크게 중창하였다. 그 후 1758년²⁶⁾과 1781년²⁷⁾에 두 차례 중수공사를 하였다.

○ 草梁客舍 外大門 改建

1825년 3월 12일 밤, 거센 비바람으로 초량객사 외대문이 완전히 부서져 파괴되었다. 외대문은 2층의 樓門으로 5량가이며 총 9칸이다. 부산진 수군첨절제사는 즉시 외대문을 복구하기로 결정하고 동래부와 순영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었다. 단청까지 마친 시기로 계산하면 1년 8개월 정도 걸린 셈이다.

외대문이 부서진 다음날 3월 13일, 필요한 재목 즉 修粧木, 椽木, 假家木, 扶械木 등을 수량대로 成冊해서 부사에게 올리고, 봉산에서 작별할 것을 좌수영에 關文으로 발송해 줄 것을 청하였다. 성책한 재목수량은 체목 33주, 수장목 85주, 연목 110주와 부계목 50주이다.²⁸⁾ 그러나 순영에서는 책정해 올린 수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체목은 20주로 수장목은 50주로, 연목은 60주로 부계목은 30주로 감해서 작별할 것을 지시하고 수영에 관문을 보내었다.²⁹⁾ 그리고 옛 목재와 기와도 재사용하며 기와를 굽는 땀감은 체목의 말단부를 베어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³⁰⁾

공사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곧 農務期와 겹쳐서 중단하였다가 11월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겨울동안 공사를 준비해서 봄에 시작할 생각이었다. 이제 재목을 작별해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일이나 匠手 등의 공사인 부수급을 재개하기위해 먼저 재목을 작별할 때 左道邊將 중에서 差使員을 한명 임명하여 작별과 曳下役을 감독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왜관의 西館 中大廳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그 해 5월부

26) 『東萊府邑誌』 (1759), 公廨

27) 癸酉 7月 10日 狀啓草, <重修廳錄>

28) 乙酉 3月 15日 牒報, <改建廳錄>

29) 乙酉 3月 15日 回題, <改建廳錄>

30) 乙酉 3月 16日 回移, <改建廳錄>

23) 釜山鎮了移文, <重修記>

24) 統營了吐木請送事報狀, <重修記>

25) 『부산의 문화재』, 부산직할시, 1993, pp119~121 참조

터 수리를 시작하고 있었고³¹⁾ 그 때문에 왜관에 이미 差員(開雲浦의 萬戶)이 파견되어 있었다. 순영에서는 그가 객사 외삼문 개건공사에서도 벌목과 예하역을 감독하도록 하였다.³²⁾ 일 할 인부는 각 진과 포에서 入防軍이 돌아가면서 사역하기로 하였다.

재목작별은 絶影島 松田에서 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왜관수리를 위하여 상당수 베어낸 상태라 松田 상황이 매우 나빠서 이번에는 다대진의 관할 하에 있는 沙下 金峙봉산에서 연목과 부계목을, 나머지 체목과 수장목은 부산진이 관리하고 있는 梁山 內浦봉산에서 작별하기로 하였다.³³⁾

그런데 갑자기 당시 동래부사 李沆이 12월 24일 사망하였으므로³⁴⁾ 공사는 또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해를 넘겨 새 부사가 도입한 후, 2월 말이 되어서야 서둘러 재목작별을 시작할 수 있었다.³⁵⁾ 개기일자는 3월 3일로 급히 정하였다.³⁶⁾ 외대문이 부서진 지 거의 1년 만에 공사를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기와는 초량객사가 있는 釜山面에서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각 里任이 맡아 기와를 굽는데 필요한 개호, 초호, 색강비 등을 납부하게 하였고³⁷⁾ 초량동민이 燔造用 임시막사를 짓게 하였다. 막사를 짓기 위한 假家木은 수량도 적어 가까운 절영도 봉산에서 베어 배로 부산진에 보내어 온 것을 사용하였다.³⁸⁾

3월 3일 개기함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기일을 서둘러 잡은 나머지 공사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재목작별과 운반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5월 말까지도 지정된 주수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水營과 梁山郡에 거듭 관문을 보내고³⁹⁾ 私通을 발송하여 이를 독촉하였다.⁴⁰⁾ 5월 말경 외대문의 개건공사는 일단락

되었으나 단청을 미처 하지 못하였던 차에 개건문의 翼廊도 무너져서 수리해야 했고 내삼문(중문)도 퇴압한 곳에 영선하여야 했으므로 이들을 수리한 후 외대문 단청공사도 겸하기로 하였다.⁴¹⁾ 11월 6일, 단청공사를 시행함으로써⁴²⁾ 외대문공사를 마감할 수 있었다.

○ 草梁客舍 重修

초량객사는 正廳과 좌우에 동헌, 서헌으로 각각 5량가, 15칸씩으로 총 45칸이며 외대문과 중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⁴³⁾ 바닷가에 가까워서 비바람에 많이 씻기고 닳아져서 기둥, 기와, 창호, 벽체 등이 많이 상하였고 담장이나 계단 초석도 무너져 내려앉아 고심한 끝에 1873년 7월 영선공사를하기로 하였다. 7월 10일, 동래부에서는 순영에 초량객사 중수를 보고하고 8월 1일 殿牌를 이안한 후 8월 3일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⁴⁴⁾

주로 전체 객사일곽의 기와보수공사와 동헌의 전면부분을 수리하고 전체 단청을 새로 칠하기로 하였다. 守直所 2칸은 새로 지었다. 아래 표는 이 중수공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⁴⁵⁾

표 1. 1873년 초량객사 중수공사 내용

건물명	間數	공사 내용	
正廳	15	전체기와를 새로 엮음	전체 60칸 모두 단청공사
東軒	15	전면 주춧돌교체 둘계단 바르게 수리	
西軒	15		
中門	6		
左右翼廊	4	전체 기와를 엮음	
外大門	9		
客舍直守直所	2	새로 짓고 기와를 엮음	
담장	350과	담장 수리하고 기와를 보수함	

31) 『邊例集要』 卷11, 館宇, 壬午 7月, 乙酉 5月 참조

32) 乙酉 11月 28日 回題, <改建謄錄>
...差員 既有倭館材木監斫之開雲萬戶 兼差舉行...

33) 乙酉 12月 7日 牒報, <改建謄錄>

34) 『備邊司謄錄』, 232冊, 純祖24年 12月 24日 참조
「東萊府先生案」, 李沆 乙酉(1825) 6月 到任, 12月 逝

35) 丙戌 2月 21日 牒報, <改建謄錄>

36) 丙戌 3月 1日 回題, <改建謄錄>

37) 丙戌 3月 1日, 釜山面任, <改建謄錄>

38) 丙戌 3月 1日, 草梁洞任, <改建謄錄>

39) 丙戌 3月 4日, 牒報, <改建謄錄>

丙戌 3月 6日, 回移, <改建謄錄>

丙戌 3月 7日 答通, <改建謄錄>

40) 丙戌 5月 15日, 牒報, <改建謄錄>

丙戌 5月 18日, 牒報, <改建謄錄>

41) 丙戌 10月 29日, 牒報, <改建謄錄>

42) 丙戌 11月 2日 回移, <改建謄錄>

43) 「東萊府誌」, 草梁公廡

『邊例集要』 卷11, 館宇, 甲寅 8月 참조

초량객사는 부산항을 개항한 후 통상, 외교업무를 맡던 부산 감리서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가 일제강점기 초량 앞바다의 埋築工事 시에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 癸酉 7月 10日 狀啓草, <重修謄錄>

45) 草梁客舍重修秩, <重修謄錄>

목재 수량은 많지 않아서 가까운 절영도 松田에서 취용하기로 하고 伐木監色을 봉산에 내려 보내어 작별하게 하였다. 기와굽는 데 쓸 땀감은 따로 작별하지 않고 絶影島에서 베어낸 나무중에서 머릿부분을 잘라 취용하기로 하고⁴⁶⁾ 배에 실을 때 필요한 기계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도록 하였다.⁴⁷⁾

초량객사 중수는 무엇보다 택일한 移安日과 還安日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준비단계부터 매우 긴박한 공사진행을 엿볼 수 있다.

治所에서 필요한 석탄이 도착하지 않아서 부산진의 營繕庫에 있는 석탄 몇 석을 먼저 빌려 쓰고 나중에 석탄이 도착하면 부산진에 돌려주도록 하였다.⁴⁸⁾ 또 철물도 所産이 있는 각 읍에서 사서 쓰기로 하였는데 현장반입이 늦어지자 필요한 철물을 水營監役所에서 먼저 빌려서 사용하고 나중에 환원하여 해아리기로 하였다.⁴⁹⁾ 초량객사공사의 木手와 引鉅匠 등 匠手도 성명을 거론하면서 현장에 투입되도록 재촉하였고 심지어 다른 현장에 나가서 거처를 알지 못하는 목수는 책임자가 그를 붙잡아 현장에 압송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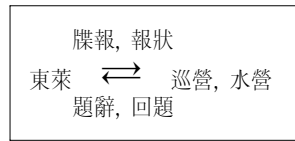
단청에 필요한 攀綠 10되, 攀朱 8되는 이미 사놓은 것을 먼저 쓰고 그 외 2綠, 3綠 등의 채색은 서울에서 사들였다. 8월 11일경부터 시작되어 밤어사의 畫僧이 단청채색 작업을 하였다.⁵¹⁾ 8월 23일 공사를 마치고 29일 부산진 永嘉亭에 옮겨둔 전패를 환안하였다.

3. 동래부 관사영선체제

3.1 建築行政과 그 文書

관영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모든 절차는 관부문서로서 牒報, 相考, 通報, 명령 등의 내용으로 상·하부 기관 상호간에 접수되는 행정이 요구되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공사가 끝난 다음 膽錄으로 만들어져 해당 문서들을 정리하여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서는 조선시대 관부문서의 형

식과 같다.⁵²⁾ 이 절에서는 동래부가 발송한 공문을 중심으로 관사영선의 건축행정을 살펴본다.



먼저 동래부의 상부기관인 巡營에 영선공사에 대한 보고 및 승인요청의 내용으로 牒呈⁵³⁾을 발송하고 ‘題辭’를 받아 시행한다. 水營과는 서로 상하게통은 아니지만 주로 목재작별과 예운을 요청하는 공문이므로 같은 접정을 쓴다. 목재작별은 아래 도식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巡營에 보내는 공문에는 먼저 水營에 신청할 재목을 정확히 산출, 성책하여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된 株數대로 수영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또 그럴 경우는 공사의 전례를 찾아 거론하여 그에 준한 수준임을 설명해주어야 했다.

무엇보다 주요 구조재나 수장목등 목재사용은 수영에서 관할하고 있는 봉산의 목재를 작별하여 사용하였고 기와를 굽는 데 쓰는 땀감도 마찬가지로이다. 동래부에는 대외방비를 위해 좌수영과 2개의 鎭(釜山鎭과 多大鎭), 7개의 浦(開雲, 包伊, 豆毛, 丑山, 西平, 漆浦, 甘浦)가 갖추어진 군사요충지였다. 경상좌수사에게는 경상좌도의 東萊, 機張, 蔚山, 慶州, 長鬐, 迎日, 興海, 梁山, 密陽 등 9개 군읍에 있는 28庫의 봉산을 보호하고 偷伐(불법으로 벌목함)을 단속할 책임이 있었다.⁵⁴⁾ 먼저 수영의

46) 幡瓦監官處傳令, 癸酉 7月 14日, <重修膽錄>

47) 監色等處傳令, 癸酉 7月 5日, <重修膽錄>

48) 釜山鎭了踏印私通, 癸酉 7月 5日, <重修膽錄>

49) 水營監役所踏印私通, 癸酉 7月 22日, <重修膽錄>

50) 役所了答私通草, 癸酉 7月 27日, <重修膽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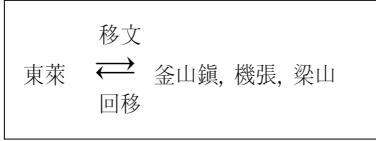
51) 梵魚寺僧統和尚等處傳令, 癸酉 8月 11日, <重修膽錄>

52) 동래부의 공사관련 공문의 형식과 그 이해는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産業社, 1989, pp180~220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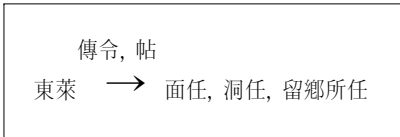
53) 牒呈은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 발송하는 공문이다. 주로 馳報, 牒報, 相考, 上送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 崔承熙, 앞의 책, p186 참조

54) 『萊營蹟』(1792~1794) 癸丑 2月 12日 固城了爲相考事

허가가 수영에 전달되면 체목, 수장목, 부계목, 땀감등의 수량과 봉산을 지정하고 작별한 목재의 구체적인 운반방법, 예를 들면 해당포의 伺候船 사용여부나 大松은 잘라서 늘어난 株數를 헤아려 운반할 것에 대해 첩보하고 제사를 받는다. 또 초량객사를 중수할 때에는 殿牌의 移安과 還安에 관한 의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 일자와 侍衛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첩보한다.



두 번째, 관부간에 주고받는 공문으로 일반적인 移文이다. 釜山鎮은 梁山 內浦와 絶影島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포 봉산은 炭峰이라고 하고 절영도 봉산은 柴峰이라고 해서 주로 땀감용 나무가 많았다. 주요구조부의 목재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날마다의 땀감과 숲을 공급하는데 쓰이는 산으로 동래부의 관영공사에서는 기와를 굽는데 쓰거나 온돌용 땀감의 주공급처였다.⁵⁵⁾ 그래서 그 벌목과 운반에 관한 공문이 위주가 된다. 기장과 양산은 조선후기 동래부와 함께 군대를 편성하는 등⁵⁶⁾ 긴밀한 관계에 있는 고을이지만 좌수영관할 하의 봉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봉산 작별은 水營과 釜山鎮을 통해서 전달되고 목수 등 인력공급에 대해 동래부에서 직접 요청하였다.



傳令은 하부기관이나 官屬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서이다. 주로 民夫의 부역에 대한 지시사항인데 기와제작이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납부에 관한 내용, 또 목재운반시 해당 면의 男丁들을 보내어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문의 예로 부사 鄭顯德이 1869년에 시작한 동헌개건공사에서 부분 발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水營了請材事報狀	서까래와 수장용으로 쓸 체목 200주를 청함.
釜山鎮了移文	기와를 굽는 데 쓸 땀감 작별을 청함.
機張了木手事移文	기장군에서 목수 4명을 보낼도록 청함.
各面了運材事留鄉所報	작별한 목재가 동헌까지 운반할 때 해당 면의 백성들이 부역할 것을 지시함.
燐瓦監官處傳令	땀감은 絶影島 松田중에서 작별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함.

마지막으로 私通은 담당자가 되는 벼슬아치간에 주고받는 편지로서 벌목현장의 감독자(差使員, 임시 파견직)나 운반담당자 또는 동래부나 수영의 건축행정담당자나 영선현장 담당자 등이 상호간에 왕래한다. 踏印私通은 발송자의 도장을 찍은 사통이며 答通으로 회신하였다. 사통은 공사도 중차대 하지만 일정이 긴박하여 지체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 특히 많이 왕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에서 자재나 목수가 제때에 공급되지 못한 경우 시일이 촉박하여 이를 독촉한다든지, 자재의 현장반입이 늦어져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하여 임시로 먼저 營繕庫의 자재를 빌려 쓰고 나중에 도착하는 즉시 되돌려줄 것을 청하였다. 또 공정 진행 중에 급한 작업지시도 사통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초량객사 중수는 공사준비부터 단청공사로 완료하기까지 약 2개월이 채 못되는 기간으로 移安祭와 還安祭의 의식까지 거행해야 했다. 따라서 관문을 발송하면서 동시에 많은 私通을 주고받아 신속한 작업진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3.2 工事의 執行組織

동래부의 관영공사에서 집행조직은 부사아래 監董과 그 하위에 責應으로 구성된다. 감독조직은 총 공사의 執行과 벌목과 曳運, 현장감독 등을 담당한 現役軍官으로 監役과 監官을 맡게 되고, 책응조직은 주로 색리와 하급군관으로 구성되어 공사에 필요한 물품, 비용 등을 공급하고 그러한 출급사무를 보는 일을 맡고 있다. 다음은 동헌개건 및 초량객사 중수 시 집행조직이다. 이 두 공사조직을 비교해보면서 동래부의 집행조직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55) 『釜山鎮誌』(1895) 封山條, 『(國譯)嶺南鎮誌』, pp108~109 참조
 56) 『肅宗實錄』 卷54, 肅宗 39年 8月 11日 丙戌條 참조

○東軒改建

監董軍官前察訪	金箕斗
監役都監前座首	文奎濤
監官行首軍官	朴志演
間良	鄭漢鳳 文圭鳳
色吏	郭瑞鳳 朴摺元
責應色吏前吏房	李時彥
時吏房	尹浩權
會計色	金啓默

○草梁客舍 重修

監董前察訪	金箕斗
開雲萬戶	林鳳祥
豆毛萬戶	劉運泰
訓導	安東峻
別差	玄豐瑞
座首幼學	金 燾
吏房	尹浩權
責應監官折衝	李基永
折衝	金啓默
色吏	邊宅浩
成造監官	朴斗演
折衝	鄭漢鳳
色吏	宋商宗
	俞致亨
	宋鍾垠

監董은 軍官이면서 전에 察訪使를 지낸 金箕斗로 같다. 그러나 이하 동헌과 초량객사의 감동조직의 인력구성의 차이는 관할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 동헌의 경우 감관을 담당한 行首軍官은 바로 동래부사의 예하부대를 관할하는 武廳⁵⁷⁾인 軍官廳의 최고책임자이다.⁵⁸⁾ 그 휘하에 退校와 색리를 거느렸다. 반면에 초량객사의 경우 감관은 開雲浦와 豆毛浦의 萬戶 즉 중4품의 수군 무관들이다. 絶影島를 앞에 두고 왜관과 초량공해에 인접해서 위치한 부산진의 휘하에 있는 개운포와 두모포 萬戶營 등이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 남쪽 수변을 지키는 군사적 진지들인 것이다.⁵⁹⁾

57) 동래에 설치된 무청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중군청, 군관청, 교련청, 장관청, 수성청, 별기위청, 별무사청, 도훈도청 이렇게 모두 8청이 간간을 이루고 있다.

58) 감관인 朴志演은 다음해 中軍을 역임하였다.

甕城雉城監役抄記, <重修記> 참조

59) 1869년 동래부성을 수축할 때 東伍軍(동래독진의 주력부대)의 장교인 中軍이 도감을 맡고 役所監官을 行首軍官 등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重修記> 참조

또 향촌사회를 대표하는 향청의 座首⁶⁰⁾가 감역도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감동조직의 색리는 정확히 어떤 직임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공방색리가 아닐까 짐작된다.⁶¹⁾ 책응색리를 전, 현직 吏房이 맡았다. 이방은 지방의 육방체제중 首任이라고 할 만하다. 즉 동헌공사는 단순한 영선규모가 아니라 부사이하 지방행정체제가 운영되어야 했던 공사이다. 자재와 재물의 출급에 관해서는 회계색리 1명이 책임 맡아 담당하였다.

초량객사에는 초량공해에 머물렀던 訓導, 別差도 감동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責應監官과 成造監官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折衝將軍인데 折衝은 武官으로 정3품 당상관, 곧 부산진의 水軍僉節制使 격인데 19세기 말 동래부에서 절충은 반드시 그렇게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⁶²⁾ 또 절충 金啓默은 동헌개건공사에서는 회계를 담당한 색리이며, 또 같은 해 동래부성을 축조할 때도 책응담당 색리였는데 나중에 절충이 되었던 것이다.⁶³⁾

3.3 民夫의 赴役實態

동래부의 관사영선공사는 모두 民夫의 부역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⁶⁴⁾ 특히 벌목과 재목운반은 상당히 많은 인부가 투입되어야 했다. 벌목목수가 현장에서 작벌을 하더라도

60) 좌수 문규형은 제임시에 지방관의 선정비인 1864년 「府使趙公奎年興學碑」와 1874년 「府使鄭公顯德興學碑」를 세우는 일에도 都監이었다. (『부산금석문』 참조) 지방관의 잦은 교체로 실제 지방행정의 실무자인 중인계급의 이서집단이 향촌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고 할 만하다. 지방관은 그들과 협력관계에 있었다. 감역이나 도감으로 좌수가 그 소임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61) 郭瑞鳳 朴摺元 이 두 사람은 모두 「府廳先生案」에 312, 339번째로 이름이 올라있다. 이 선생안은 동래의 府廳職任을 역임한 인물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실제로 이 안의 성격이 불명확하지만 대체로 동래부의 공방을 포함한 작정직임자의 기록으로 보이며 공사조직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공방색리로 짐작되는 것이다.

62) 「府使李公容植永世不忘碑」(1890)의 기록을 보면 무청의 대표로 기록된 別砲別將(군관) 折衝 姜渭俊이나 行首執事(서리) 折衝 辛明鋒등이 있는데 이들을 첨사급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금석문』 p254 참조

63) 甕城雉城監役抄記, <重修記> 참조

64) 동래부는 특히 부역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던 지방이다. 영선공사뿐만 아니라 각 진과 포의 兵船築造나 城郭修築에 동원되었고 때로는 변방의 수호와 유지를 위한 군역으로서, 또 각 진영이나 관아의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등 군역첩정이 극심하였다. 공사가 겹치게 되면 동래부의 관아영선공사에서 일하다가도 부산진 첩사영의 민부를 돌려보내라는 요청을 받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현장까지 옮기는 일은 상당한 시일과 많은 역부가 필요한 일이었다. 좌수영휘하의 각 진과 포의 협조하에 軍官이 監色을 맡아 벌목과 운래 감역을 맡았다. 재목을 운반하는 일도 각 鎭과 浦의 伺候船을 이용한 배편과 수레에 실어 옮기는 육상 運來가 겹쳐져야 했다.

초량객사 중수시 絶影島 봉산 작별후 수변까지 목재 운반하는 일에 沙下面, 釜山面, 南村面의 백성들이 매일 100명씩 나누어 섬에 보내어졌고 그에 대한 혜택으로 세 면의 잡역을 감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쌀 20석을 섬에 보내어 주어 糧料가 되도록 하였으며 밥을 해 먹을 가마와 솥은 해당 면에서 마련해야 했다⁶⁵⁾. 외대문 개진시에도 梁山의 內浦 봉산에서 작별하여 70주를 운반하는데 大松의 경우 1주에 500명의 烟丁이, 中松의 경우는 100명이 필요할 정도였다. 잔읍(梁山郡)의 민세가 어려워서 어떻게든 목재를 잘라서 운반해야만 하였던 것이다.⁶⁶⁾ 그렇지만 이들 벌목목수나 烟丁에게 부역일수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주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일이었다.

특히 봉산 송전아래 백성들은 봉산과 관련한 갖가지 民役을 감당하여야 했다. 兵船축조나 관아영선을 위하여 작별할 때 수변까지 운반하는 일은 물론이고, 松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왕래하는 장교나 그 군졸, 하인에 이르기까지 접대를 도맡아야 했으며⁶⁷⁾ 山任을 문책하고 벌할 때 드는 경비까지 책임져야 했다.⁶⁸⁾ 동래부 동하면의 경우, 마을의 뒤편에 있는 長山은 수영이 관할하는 봉산이었다. 통신사가 올 때의 임시가옥(假家)을 짓는 재목으로 동쪽의 봉산 소나무를 찍어 운반할 적에는 유생, 장교뿐만 아니라 동하면의 민호 등으로 상하단에서 바로 해운대까지 끌어내려서 해민의 배로 실어 수로로 동소리 강 어구에 운반하여 읍민으로 하여금 관가에 바치게 하였다. 봉산에 수영의 장교가 摘奸하러 올 때 접대하는 일이나 땀감을 조달해야 하는 형편에 봉산의 출입을 감독하는 山任에게 매달 얼마씩의 뇌물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그 폐단이 심하였다.⁶⁹⁾

65) 監色了私通, 癸酉 7月 9日, <重修瞻錄>
 66) 丙戌 3月 7日, <改建瞻錄>
 67) 東下四洞節目冊, 『東下面古文書』 pp67
 68) 甲寅 9月 初5日, 小錄巡營, 『萊營政蹟』
 69) 東下四洞節目冊, 『東下面古文書』, pp71 참조(이 절목은 1769, 1811, 1813년에 거듭해서 만들어졌다)

기와를 제작할 때 관에서 땀감을 공급받아 監官의 감독하에 해당 면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공급한 후 개수를 헤아려 관에서 값을 치루었다. 동헌개건시 기와는 沙下面에서 만들게 하였고 초량객사 외대문의 경우는 초량객사와 가까운 부산면과 초량동민이 제작하였다. 蓋瓦工事が 위주인 초량객사 중수시는 東平面과 南下面의 大淵里, 龍湖里, 南川里 등에서 地瓦 4,313장, 壁瓦 566장을 만들어 납부하였고 그 댓가로 관에서 151량 4전 6푼을 헤아려 주었다.⁷⁰⁾

초량객사현장에는 釜山, 沙下, 沙上, 東平, 南村 등 5개 面의 연정이 부역하게 하고 부역일자는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45일이며 이들 연정과 匠手(木手, 石手, 泥匠, 冶匠, 引鉅匠)를 포함하여 入防軍에게 까지 모두 임금을 지급받았다⁷¹⁾. 구체적인 작업은 알 수 없지만 아래 표와 같이 아사영선의 종류와 담당 면에 대해 상세히 분배해 놓고 있는 光陽縣의 경우⁷²⁾가 있어 참고가 된다.

표 2 광양현 영선종류와 담당면

영선종류	담당 면
내외아사 수리	玉龍, 赫內, 沙谷
도배공사 (벽, 창호, 방바닥포함)	객사, 동헌 - 松川寺 책실, 내아 - 玉龍寺
내외아사와 객사의 풀베기와 모래갈기	읍내면 3리
온돌 굴뚝 수리	屯田洞
공해각치의 온돌 굴뚝돌	人德, 德山村
담장과 울타리둘레수리	각 면과 屯田에서 分役
객사담장수리	玉龍, 沙谷
外工庫의 松板과 長木공급	赫內, 玉龍 ⁷³⁾
영선시 松板과 長木공급	赫內, 玉龍, 玉谷, 津上, 多鴨

70) 草梁客舍重修秩, <重修瞻錄>
 71) 工價 合計 錢2,401兩5錢1分 草梁客舍重修秩, <重修瞻錄>
 72) 「光陽縣各所事例冊」 工房 참조
 73) 「光陽縣各所事例冊」 工房
 新迎支裝物種瞻錄 新迎時 所用木物
 玉龍 柱木 5개, 道里木 5개, 椽木 30개, 차양 15立,
 木槽 3좌, 松板 10立
 赫內 柱木 3개 道里木 4개, 椽木 30개, 차양 10立

3.4 封山木材斫伐과 運送

동래부의 관사영선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근 봉산에서 작벌하여 사용하였는데 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상좌수영휘하 각 진과 포의 협조가 요구되었다. 3.1절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순영에서 동래부의 작벌허가신청을 받아 재목수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시 수영에 첩보한다. 순영의 첩보를 받은 수영은 다시 동래부의 작벌신청을 접수하여 봉산을 결정하고 陸運과 水運방법 및 벌목장수와 奉足軍 부역을 계획한다.⁷⁴⁾ 벌목장수 使役이나 水邊까지의 曳下는 모두 봉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관의 일이었다.⁷⁵⁾



그림 2 동래부(영남지도) 중 일부

동래부에서 가장 가까운 봉산은 絶影島로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부산진의 앞바다에 있다. 동헌이나 객사를 중수할 때 이 절영도 松田에서 재목을 작벌하여 육로와 수로를 번갈아 현장까지 운송하였다. 松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진에서 그 운반을 책임지고 伺候船 등 배편을 마련하였다. 작벌과 운송에 대한 民夫의 부역실태는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큰 목재는 운반이 편하도록 잘라서 운반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株數는 반드시 확인해

야 했다. 초량객사 외대문에 필요한 대송은 길이가 9把(90尺)가 되고 둘레는 3把(30尺)가 될 정도로 큰 데다 벌목봉산도 沙下 金峙와 梁山 内浦로 비교적 먼 거리였고 각 鎭과 浦의 伺候船을 이용하여야 했고 각 浦의 邊將 중에서 그 감독을 맡게 하였다. 大松은 한그루 옮기는데 역부가 500명, 中松은 나무마다 100명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래서 운반이 편하도록 나무를 잘라 70주였던 재목이 84주가 되었다. 그런데 늘어난 수만큼 제때에 공급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⁷⁶⁾ 株數 계산에 상호간 혼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봉산의 목재는 좌수영에서 매우 엄하게 관리하였으므로 관영공사에 공급되는 목재라 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를 반복해야 할 경우도 있었다.

작업하고 남은 여분의 나무를 기와 燒造의 땀감으로 돌려 사용하게 하였다. 또 관아를 헐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한 舊材나 기와들은 한 곳에 모아두고 덮개를 덮어 보관하였는데 이때 設門將과 修理監色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였다. 또 작벌이 끝나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그 舊材들이 漏濕하여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하도록 하였다.⁷⁷⁾

3.5 官舍營繕의 財政

조선후기 지방의 관사설치에 따른 제반 경비는 해당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반출하고 있었다. 기구 확장에 따라 신설된 청사의 건립경비는 대체로 대규모였지만 지방의 수세구조에서 관청사의 영선의 명목으로 별도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없었다.⁷⁸⁾ 조선시대 지방관의 지참서인 정약용의 『牧民心書』 중의 「工典」 繕廡條 에서는 이와 같은 관아 영선의 책임도 전임 수령에게 있으므로 어진 수령은 관아에 거처할 때도 깨끗이 사용하여 훼손하는 법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⁷⁹⁾ 관의 재정구조상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했으므로 고을 수령의 개인자금도 털어야 했고 관례상 그 고을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맡겨야 하는 일이어서 백성

76) 丙戌 5月 18日, <改建謄錄>

77) 回移 乙酉 3月 16日 <改建謄錄>

.. 草梁客舍外三門額壓處搗奸後 材瓦中仍舊可用者 收聚同處是在果 報營請材之間...材木蓋覆然後 庶無朽傷之患是如乎 自貴鎮知委所授該浦 使之蓋覆爲乎矣 蓋覆時 亦自貴鎮發遣修理監色與設門將 眼同舉行 俾無漏濕朽傷之弊爲旅...

78)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金玉根, 一潮閣, 1984, 참조

79) 『牧民心書』 卷5, 工典 참조

74) 水營吏私通 <重修謄錄>

...巡營關文未到爲有置 同材木烙給後 陸運水運與匠手奉足等區劃從何責應是隱喻...

75) 辛丑年改建謄錄送事 水營吏私通 <重修謄錄>

...材木斫伐木手與曳下水邊之役封山地方官擔當...

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1859년에 동래부성을 보수할 때도 2달 정도의 토목공사에 총공사비가 1,271량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그 외 자재구입비와 落成宴에 소모되었다. 비용을 충당하기가 힘들어 10%만을 守城倉의 作錢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환곡을 고리대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임시적인 잡역세로 추가징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⁸⁰⁾

동래부의 영선공사에 대한 재정보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먼저 관청식리로서, 工錢, 守城錢 등의 명목으로 책정해 둔 것을 사용하였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그것을 본전으로 이자를 불러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먼저 2.1절에서 설명한 바 있다.

관청식리사례로는 多大鎭에서 守城錢으로 300냥을 본전으로 하고 10분의 2를 이자를 놓아 72냥이 되어 모두 372냥인데 48냥은 매년 수성장관의 頒料로 지급하고 24냥은 매년 성가퀴를 수리하는데 보태어 쓰게 하여 300냥은 본전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⁸¹⁾ 또 光陽縣에서는 공방에서 50냥의 殖利錢을 마련하여 년리 5할의 이자로 지역의 3개면에 출급하여 내외아사수리비용에 충당하였다.⁸²⁾

두 번째, 관사수리비용을 백성들이 직접 각출하여 그것을 本錢으로 삼아 식리활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동래부에서는 고종 4년(1867) 아사수리 비용의 일부를 동래부의 西面, 東平, 釜山鎭, 東上, 東下 등 5개면에서 18냥씩 차례대로 돌아가며 거두어 내게 하였다. 그러나 그 전례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져 변통하는 방법으로 아직 차례가 닿지 않은 西面, 東平, 釜山 3개면에서 미리 18냥을 내면 합계 54냥이다. 이것을 시장상인(布塵商)에게 주어 년리 3할로 식리하면 1년 이자가 16냥 2전, 2년이면 21냥 6푼이며 3년이면 27냥 3전 6푼이 되므로 이를 비축하면 앞으로 있을 관아 건물 수리비용에

보충하기에 충분하도록 절목을 만들고 지키게 하였다.⁸³⁾ 또 東下面의 경우 해운대에 유람을 오는 관리들을 접대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나 적당한 장소가 없어 너댓간의 건물을 지어 面所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때에도 각 동리에서 3-5냥, 유지들은 개인적으로 3냥에서 2냥까지 내어 총 60냥 8전을 모아 노초로 지붕을 덮은 海雲臺 支應所를 마련하였다.⁸⁴⁾

光陽縣의 경우를 보면 담장수리 등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공사는 담당한 면에서 경비도 마련하게 하였다. 내외 아사의 수리와 담장 개복에 드는 경비는 공사를 맡은 세 면에서 丙申年(1848)에 시작하여 전50냥을 출급하여 본전을 두고 이자를 취해 條25냥을 춘추 두 번으로 나누어서 관에 바치고 수리하였던 것이다.⁸⁵⁾

세 번째, 동래부에서는 사례가 없지만, 부족한 비용을 監營이나 비변사에서 지원받는 경우이다.

순조 11년(1811) 眞寶縣의 경우 관아 및 공해를 건립하는데 5,000냥이 소요되었는데 현감이 500냥, 校阮 및 향토인인 1,000냥을 마련한 후 부족한 경비는 감영에서 3년을 기한으로 公貨를 대부받아 충당하였다.⁸⁶⁾

4. 결론

동래부의 관사영선구조와 체제에 대해 주로 동래부의 공문과 일반 사료를 조사 연구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임지방관에 대한 신영예절로서 관례적인 관사영선의 규모는 주로 東軒과 內衙의 벽과 바닥 도배에서 경우에 따라 내아와 담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그 영선의 규모가 항상 같지는 않았다. 동래부에서 공사의 회계와 물자수급담당은 공방색리의 업무였지만 새로 부임한 지방관에 대한 신영예절로서 관사수리는 六房과 이하 모든 향촌의 행정조직이 동원된 중요한 행사였다. 또 관사는 공

83) 東下面衙舍修理時例捧錢盤革節目 『東下面古文書』, pp106~107 참조

84) 海雲臺支應所勸善錢抄(1858), 『東下面古文書』, pp170~173 참조(支應所건립에 들어간 지출내역이 정리되어 있음)

支應이라 함은 벼슬아치가 공무로 출장하였을 때 그 곳에서 필요한 제반물품을 내어 주는 일을 말하며 지용소란 일종의 공무물품 공급처의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85) 『光陽縣各所事例冊』, 工房 참조

86) 『備邊司謄錄』, 201冊, 純祖 11年 11月 22日

80) 「萊府日記」, 金鉉, 解題 참고

81) 「多大鎭事例」, 守城錢秩

本錢三百兩 十二生殖七十二兩 合錢三百七十二兩內 四十八兩 每年守城將官頒料下 二十四兩每年城堞修理補用 在三百兩內本

82) 「光陽縣各所事例冊」, 工房, 참조

...丙午年爲始錢五十兩出給三面存本取殖利條二十五兩春秋兩等排捧修理事...

방색리가 건물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수리하여 관리하여왔고 관사의 퇴락정도가 심하면 대규모 중수공사가 시행되었다.

둘째, 관사영선은 관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건축행정이 수반되었다. 동래부에서는 19세기에 동헌과 초량객사의 대규모 영선이 있었으며 이 때 독립된 공사기구가 없이 임시로 조직을 편성하여 자체적인 需給構造로 진행되었다. 공사의 승인과 봉산작별허가, 수송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 납부, 民夫의 부역지시 등이 모두 상하부 기관간의 공문서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관부문서의 형식은 조선시대 일반적인 문서와 같으며 이를 통해 동래부의 관사영선의 절차와 타기관과의 관계 및 동래부의 영선체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관사영선의 집행조직은 監董과 責應으로 구성된다. 감동은 전체공사의 총감독이며 그 아래 봉산작별과 운반, 기와제작시 땀감사용 등을 감독하는 監役과 監官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모두 고위 軍官들로서 특히 각 鎭과 浦의 兵船과 수레를 사용하며 奉足으로서 入防軍의 사역 등을 지시하였다. 군관편성은 해당 관할처와 관계가 있었다. 책임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회계사무를 담당하였는데 하급군관이나 행정부서의 색리가 담당하였다.

넷째, 봉산작별은 정확한 수량을 순영과 수영에 확인한 다음 작별과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수영휘하의 동래부 수변의 각 진과 포에서 책임져 시행되었다. 絶影島를 위시한 인근봉산에서 목재를 취용하여 수로나 육로를 통해 운반되었고 다수의 민부가 그 감역에 투입되었으며 이러한 목재취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어 공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다섯째, 관사영선의 경비는 지방의 수세구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출규모는 대체로 큰 편이었고 미리 책정해 둔 工錢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부족한 경우 관청식리나 해당 면에서 거두어들여 본전을 취해 이자를 불려나가 충당하였다. 영선공사에 부역한 匠手 및 인부에 대한 임금제도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었으나 松田 아래 사는 백성들의 民役이 가중되어 있었고 공사현장에서 역부로 일하는 것을 잡역으로 전환하는 등 폐단도 없지 않았다.

<참고문헌>

1. 「城役及各公廨重修記」, 奎18133
2. 「公文日錄」, 奎18149
3. 「草梁客舍重修謄錄」, 奎18136
4. 『備邊司謄錄』, 國史編纂委員會篇, 1959
5. 『東萊史料』 2, 3, 驪江出版社, 1989
6. 『(國譯)萊府日記 多大鎭公文日錄』, 釜山光域市史編纂委員會, 1995
7. 『(國譯)嶺南鎭誌』, 釜山光域市史編纂委員會, 1996
8. 『(國譯)萊營政蹟』, 釜山光域市史編纂委員會, 1997
9. 『부산금석문』, 부산광역시,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2, 12
10. 『東下面古文書(譯註影印)』, 海雲臺區, 1994
11. 『港島釜山』, 創刊號, 1962, 12
12. 『韓國地方史資料叢書』 7, 8(事例篇 1, 2), 驪江出版社, 1987
13. 『譯註牧民心書V』, 丁若鏞 著, 茶山研究會 譯註, 創作과 批評社, 1985
14.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一潮閣, 1984
15.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産業社, 1989,
16. 吳永教, 「朝鮮後期 地方官廳 財政과 殖利活動」, 學林 第8輯, 1987
18. 閔善姬, 「朝鮮後期 東萊의 鄉班社會와 武廳」, 歷史學報 第139輯, 歷史學會, 1993, 9
19. 李源鈞, 「朝鮮時代 地方官의 交遞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論文, 1987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government office in *Dongnaebu* at 19c

Kim, Sookyung

(Dept.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

Kim, Soon il

(Professor, Dept.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construction of government office of *Dongnaebu* through researching the construction reports and historical documents in 19century.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local construction system and operation for the government offic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1) Scope and process of construction, 2)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and official notes, 3) Organization of participants and the feature, 4) Felling trees and transport, 5) Monetary of construc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Repair office customary were the courtesy new provincial man. Government building were inspected and repaired periodically.

2) Administrative system of construction have been operated. There are official notes which are about application, permission and order, concerned works such as logging at the *bongsan*, means of transport, paying wages and progressing works.

3) Organization of construction was made up of an officer and *sangnee* to supervise and supply.

4) Due to financial difficulty, local government reserved and appropriated funds with moneylending for building office.

keywords : *Dongnaebu*, construction of government office, official notes,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construction system
